#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시설대관 규정

제정: 2009.07.09. 개정: 2014.03.20. 개정: 2018.01.03.

개정: 2023.02.1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상하이한국문화원(이하 "문화원"이라 한다)의 시설과 장비를 한국문화예술의 보급과 한·중 문화교류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원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한국문화예술의 진흥·발전과 한·중 문화교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 대관 또는 대여 할 수 있는 문화원의 시설과 부대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대관할 수 있는 문화원 시설
  - 가. 강의실(2. 3층 강의실)
  - 나. 전시실(3층 전시실)
  - 다. 공연공간(3층 아리랑홀)
- 2. 대여할 수 있는 물품(문화원 내에서만 사용가능)
  - 가. 마이크, 빔 프로젝터 등 행사에 관련된 부대장비
  - 나. 장구. 북. 가야금 등 행사에 관련된 전통악기
  - 다. 한복, 한국전통 장신구 등 행사에 관련된 물품

## 제3조(대관 기간 및 시간)

- 1. 반입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한 대관 기간은 문화원 내부행사와 다른 단체의 이용을 위해 연속 3일 이내 원칙으로 하며 전시 대관 기간은 1~2주 이내 원칙으로 한다.
- 2. 각 시설 및 부대물품의 대관 가능일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한다.
  - 가. 문화원 휴무일을 제외한 화요일~토요일 9:00~18:00(반입 및 철수 포함)
  - 나. 대관 가능 기간 매년 3월~12월10일

제4조(대관조건) 대관 신청자는 문화원의 자체 기획전시·공연·교육·행사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문화원의 시설을 대관 할수 있다.

- 1. 중국 내 한국문화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
- 2. 한·중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양국 문화교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
- 3.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

- 4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·후원하는 행사
- 5. 현지에 진출한 한국 예술인 또는 기업이 진행 하는 한·중 문화 교류행사 및 교민 대상 문화행사
- 6. 기타 한국정부 또는 문화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제5조(대관신청) 문화원 시설을 대관 하고자 하는 신청인(또는 단체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관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에 행사계획서와 신청인(또는 단체)의 활동 경력 및 기타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대관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, 성명, 연락처(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, 성명, 메일, 전화번호, 팩스 등)
- 2. 대관하고자 하는 문화원 시설 및 부대물품
- 3. 물품반입, 행사장 설치, 철수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한 희망 대관시간
- 4. 대관 행사내용(행사명칭, 주요내용, 개최목적, 반입품의 종류 및 수량·규격, 참여인 원 수 등)
- 5. 공연자(또는 전시자)의 공연·전시 경력 등
- 6. 행사물품과 집기 목록 및 반입, 설치, 철거시간
- 7. 냉난방시설 사용신청 여부
- 8. 수익사업 여부

제6조(대관승인) 문화원은 대관신청을 받은 후,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같이 대관을 승인한다.

- 1. 문화원은 본 규정 제5조에 기재된 대관 신청자료를 신청자(또는 단체)로 부터 전부 제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관 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자(또는 단체)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2. 문화원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대조건을 달 수 있다.
- 3. 문화원과 대관신청자간의 대관 관련 협의는 대관신청서 및 <주상하이한국문화원 시설대관 규정>(본 규정)과 <주상하이한국문화원 시설대관신청자 의무사항 확인 서>(별지 제2호 서식)에 입각한 대관 협의로 대신한다.

제7조(대관 거부 및 승인 취소와 중지 등) 문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거부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.

- 1.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
- 2. 특정종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(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 외)
- 3. 개인 기업체, 단체 등의 기념행사 또는 시상식과 같은 성격의 행사
- 4. 문화원 시설, 설비의 관리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
- 5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
- 6. 문화원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를 할 우려가

있는 행사

- 7. 어린이가 참가, 참관하는 행사로 문화원이 요구하는 소방·안전요원을 확보하지 않 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행사
- 8. 개인전. 개인 공연 등
- 9.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
- 10.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 중지 또는 취소를 받은 자
- 11. 제출한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대관승인 후 신청기재 내용 과 상이한 행사를 진행할 경우 또는 제4조의 대관조건을 위반할 경우
- 12. 천지재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및 부대물품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
제8조(대관내용 변경) 문화원과 대관자는 대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,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- 1. 대관승인 통지를 받은 자가 행사일정 또는 주요행사내용을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사전에 문화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.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업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, 대관자와 협의하여 대관의 기간이나 사용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.

## 제9조(대관료)

- 1. 무상 대관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문화원 행정직원 정상 출근 시간 외에 문화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대관 관리 및 협조에 필요한 문화원 직원 의 업무 시간외 인건비(지원인력 시간외 근무 수당 등)를 대관자가 부과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2. 기타 추가비용(주차비, 냉난방시설 사용료 등)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대관자가 별도 협의하여 책정 후, 대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.

제10조(냉난방시설 사용료) 냉난방시설 사용료의 결정·납부·면제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.

- 1. 문화원 입주 건물에서 냉난방 시설 가동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시간 (중국법정휴일과 문화원 개방시간 외의 시간)에 대관자가 문화원 시설을 대관하여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별도로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.
- 2.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문화원 건물관리업체(物业)에 별도로 냉난방신청을 하여 발생하는 실비며, 건물관리업체와 대관자 간 직접 정산을 한다.
- 3. 단,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실비정산이므로 건물관리업체에서 부과하는 냉난방시설 사용료 규정에 따라 변동하여 적용된다.
- 4. 냉난방시설의 사용여부와 대관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관신청서에 냉난방시설 신청 여부 및 사용시간 등을 기재한다.

제11조(대관자의 의무 및 책임)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문화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지켜야 하는 의무 및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문화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는 진행 불가하다.
- 2. 대관자는 문화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3. 대관자는 행사 진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, 문화원 시설 및 장비의 사용 계획은 사전에 문화원 담당자와 협의·결정 하여야 한다
- 4. 대관 진행시 벽면에 붙이는 모든 행위(포스터, 네임택 등)는 문화원과 사전에 협의하며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.
- 5.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부분은 진행 불가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행위 는 진행 불가하다.
- 6. 대관자는 문화원이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대관 전 대관신청자 의무사항 확인서(별지 제2호 서식)에 사인 및 제출하여야 한다.
- 7. 대관자는 문화원장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때, 즉시 응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.
- 8. 대관자는 행사 종료 시 해당시설을 원상 복구(쓰레기 수거 및 반출 포함)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는 대관자가 책임지고 진행한다.
- 9.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.
- 10. 대관자가 대관기간에 문화원 시설을 훼손하거나 문화원 물품의 파손 또는 소실을 초래할 경우, 해당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(소방, 안전관리)

- 1. 대관자는 소방시설 설치,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만 반입 가능하다.
- 2. 문화원은 문화원 시설 및 장비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인화성 물질(휘발유, 시너, 가스, 등)과 담뱃불, 성냥, 라이터, 촛불, 화약류 등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.
- 3. 문화원 입주 건물 규정에 따라 금연을 준수 한다. 흡연 적발 시 건물 보안협회에 서 책임과 벌금을 요구 할 경우 대관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.
- 4. 대관자는 대관행사 진행시 소방·안전요원을 비치하여야하고, 소방·안전요원 미비치 또는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소방·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
#### 부 칙 <2023.02.17.>

이 규정은 문화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(2023.02.17.)부터 시행한다.